

# “INipay”이용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썬이니스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이하 “INipay ”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이하 “쇼핑몰 ”이라 한다)에서 상품(이하 ‘서비스 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을”의 “INipay ”를 통해 지불승인대행 및 매입대행서비스, 대금정산서비스 및 기타 관련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고객 :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을”의 “INipay ”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 ② 상품 :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을 총칭
- ③ 실물상품 : 고객의 결제 후 배송이 수반되는 유형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서비스.
- ④ 디지털상품 : 실물상품을 제외한 무형의 상품
- ⑤ 지불승인대행 :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거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쇼핑몰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을”의 업무
- ⑥ 매입대행 업무 : 금융기관의 대금정산에 관한 승인과 별도로 대금정산을 위한 매입업무가 요구될 경우, 해당 매입업무를 대행하는 “을”의 업무
- ⑦ 대금정산서비스 : “을”의 “지불승인대행 및 매입대행 업무를 이용하여 “을”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거래의 지불대금을 상호 약정한 제반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⑧ INipay : “갑”이 관리,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지불에 대하여 지불승인대행 및 매입대행 업무, 대금정산 및 기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한 부가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을”의 전자지불서비스
- ⑨ 비정상거래 :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제 3 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또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고객이 본인 또는 제 3 자의 신용카드 및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동용을 목적으로 한 거래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거래.
- ⑩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나 결제수단이 진정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제수단으로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책임.

## 제 3 조 (“갑”의 책임과 의무)

- ① “갑”은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내역의 사실 확인 및 쇼핑몰 미수금(채권) 발생시 채권환수가 가능하도록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포함한 거래내역 자료를 최소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을”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및 비정상 거래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 ② “갑”은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 거래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의무와 취소권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 제 4 조 (“을”의 책임과 의무)

- ① “을”은 “갑”이 “INipay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을”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② “을”은 “INipay ”를 연중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 7 영업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 ③ “갑”이 “을”의 INipay Plugin 모듈을 이용하여 전자지불 서비스를 하는 경우, 네트워크상의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INipay”서비스 제공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제 5 조 (대금정산)

- ① “을”은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INipay ”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을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 ② 전 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 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 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 ③ “을”은 대금 정산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④ 대금 정산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갑”과 “을”은 “INipay”거래중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제 2 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⑥ “갑”이 “INipay” 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권에 대하여 “을”은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정한 지불수단 중 취소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갑”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코저 할때는 7 일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⑧ “갑”이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 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⑨ “을”은 고객민원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을”의 귀책으로 귀속될 경우에는 차기 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⑩ “을”의 지불승인 대행업무는 결제승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 6 조 (고객민원의 처리)

- ① “갑”은 “INipay ”이용중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갑”의 책임하에 제반문제를 성실히 해결 하여야 하며 “을”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 ② 고객과 관련기관(금융기관 등)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시 “갑”과 “을”은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고객민원 가운데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INipay ”이용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지정한 은행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 ④ “갑”이 고객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INipay ”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 ①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갑”의 거래 가운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객이 불법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발생시킨 비정상 거래에 대하여 “갑”은 “을” 또는 관련기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이나 e-mail 또는 유선으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내역 관련자료와 함께 제 3 조 ①항에 명시한 제반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요청일로 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 또는 관련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비정상 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갑”은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처리가 7 일 동안 지연될 경우 “을”은 해당 거래 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관련 금융기관에서 “을”의 정산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이 지정, 요청한 방법에 따라 “을”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의 지급보류 금액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갑”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INIPay” 중지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 1. “갑”의 “쇼핑몰”에 대해 비정상 거래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을”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을”의 판단이 있는 경우
  - 2.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예금질권 등 포함)를 “을”에게 별도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 3. 최종 할부 매출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금융기관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경우
  - 4. 기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 8 조 (신용카드 할부판매)**

- ①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갑”의 할부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을”은 “갑”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 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갑”의 쇼핑몰 할부판매가 회원가입비(영업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단단계 영업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 가능성이 많은 유·무형의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종지 또는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갑”은 고객으로 부터 할부거래에 따른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용카드 승인제한)**

- ① “을”은 “갑”의 신용도, 매출유형, 고객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등 “을”의 리스크 관리, 운영 방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년,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이 신용카드사로 부터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갑”이 책임을 진다.
- ③ 신용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갑”의 신용카드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종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유 및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 이메일(e-mail)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 ① 실시간계좌이체
  - 1)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 2)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일 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관련 지불수단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 ②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1)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 ③ 본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11 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 ① 휴대폰 또는 ARS 전화결제, 폰빌을 이용하여 결제된 거래대금은 당사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 정산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본 계약의 제 5 조 내용과는 별도로 결제대금 정산 후, 익월 10 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 ② 통신사가 고객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12 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 ① 상품권 서비스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 중 이니페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칭한다.
- ②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적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 ③ “갑”은 건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⑤ 기타 상품권 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은 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 13 조 (거래정보의 제공)**

- ① “을”은 해당기관(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갑”의 거래정보와 고객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갑”은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고객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구매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득한 후 “을”에게 제출해야 하며, “을”은 “갑”으로 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 14 조 (손해담보물 제공)**

- ① “갑”은 본건 “INIPay”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금액: 일금 \_\_\_\_\_ 원 (₩ \_\_\_\_\_)**
- ②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INIPay” 이용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INIPay”의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단, “을”은 “갑”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갑”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신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갈음 할 수 있다
- ④ “을”은 “갑”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소유권)**

“을”이 “갑”에게 제공한 “INIPay”의 모든 구성요소(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를 제공, 타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6 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의무)**

- ① “갑”과 “을”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완료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갑”은 “INIPay”계약 당시의 사업자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등 “쇼핑몰” 등록정보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시에는 발생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주소 또는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 ③ “갑”은 “INIPay”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 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건에 대하여 “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약의 변경, 연장 및 해지)**

- ①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간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 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 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면통지 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갑”과 “을”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갑”또는 “을”이 제 3 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3)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상호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4)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 5) “갑”이 “을”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와 제 3 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 ④ “갑”은 계약해지 후 “INIPay”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을”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이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 ⑥ 계약서 제 5 조, 제 6 조의 효력은 “INIPay” 이용계약의 해지시에도 고객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 ⑦ 상호, 대표이사, 주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 조 (서비스 중지사유)**

-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INIPAY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 1.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한 경우
  - 2. “갑”에게 제 3 자로부터 소송,가압류,가처분 등이 제기된 경우
  - 3. “갑”이 본계약 체결시 판매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시 등록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 4. “갑”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된 경우
  - 5. “갑”이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6. “갑”이 특별한 사정 없이 15 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는 경우
  - 7. 기타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전 1 항 각호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을”은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 ①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발생 30 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내용 및 상대방(제 3 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본 조 1 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본 조 1 항에 의한 통지가 있거나, 통지 도달후 7 일 내에 “을”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INIPay”서비스를 제 3 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을”과 제 3 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④ “갑”이 “INIPay”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을”간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립적으로 승계한다.

**제 20 조 (분쟁의 조정)**

- ① 별도의 부칙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 ③ “갑”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쇼핑몰”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갑”과 “을”은 계약 기간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갑”은 “INIPay”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 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2 조 (손해배상책임)**

- ① “갑”과 “을”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전 제 10 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본인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 비정상 거래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만일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업무상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 ④ “갑”은 “을”이 제공한 “INIPay”를(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 임의로 변경, 수정할 수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 수정한 경우 발생한 문제 손실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 23 조 (기타)**

- ① “갑”은 “을”의 상호로 “INIPay” 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중요화면에 명시하고, 쇼핑몰을 통한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을”의 “INIPAY”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을”의 “INIPay”는 지불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 ③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그리고 상관례에 따른다.
- ④ INIPay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을”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 해외 사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자필 기명날인 후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첨부 요망**

20    년        월        일

(갑 : 이용자)

법인사업자

법인명판

(법인인감)

**인감도장으로 날인**

개인사업자

대표이사 :

주민번호 :

주 소 :

(개인인감)

**인감도장으로 날인**

(을 : 제공자)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4 하이엔드 타워  
2차 12층

주식회사 이니스

대표이사 전 수 용 (인)

**- 부 칙 1 -**

**제 1 조 (지불수단의 범위, 정산주기 및 정산일)**

- ① “을”은 아래 부칙 2 조의 지불수단 중 “갑”이 요청하는 지불수단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지불수단에 대한 매입범위와 정산주기 또는 정산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②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서비스”의 정산주기 및 정산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산주기	정산범위	정산일	정산대금 이체 수수료
월 4 회	01 ~ 07 일	15 일	정산 건당 000 원(부가세 별도) 정산대금 이체수수료의 징수는 “을”이 홈페이지(www.inicis.com)를 통해 적용일자과 적용수수료를 공지한 후 이를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시중은행의 통상 인터넷 뱅킹 이체수수료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08 ~ 14 일	22 일	
	15 ~ 21 일	29 일	
	22 ~ 31 일	익월 8 일	
월 2 회	01 ~ 15 일	22 일	
	16 ~ 말일	익월 8 일	
월 1 회	1 ~ 말일	익월 8 일	
일일정산	매일	승인후 7 일	

지불수단	신용카드	실시간 I 계좌이체	실시간 K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비 고
정산주기					상위정산주기 입력

- ③ “휴대폰지불과 전화결제 서비스”의 정산은 매월 1 회로 하며(승인일자로 부터 3 개월 후 발생), “을”은 “갑”에게 승인 3 개월 후 5 일까지 정산대금을 통보하고, “갑”이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대금을 통보 당월 5 일자에 지급한다.
- ④ “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의 정산은 매월 1 회로 하며 승인이 발생한 날의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 ⑤ 정산일이 공휴일, 금융권 비 영업일인 경우 또는 정산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금융권 업무에 준하여 시행한다. (일일정산의 정산일수 계산시 일수는 영업일(금융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지불수단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율)				선택	비 고		
지불수단 수수료	신용카드	외환	%	KB	%	( )	무이자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와 별도로 적용한다.	
		롯데	%	BC	%			
		현대	%	신한	%			
		삼성	%	NH	%			
		하나SK	%	통합	%			
	실시간 I계좌이체	최저수수료	원	공인 인증 ( )원		( )		
				모바일 인증 ( )원,				
	실시간 K계좌이체	최저수수료	원			( )		
			%					
	휴대폰	컨텐츠	%			( )	통신사 수납금액 대비 제반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실물	%					
	ARS 전화결제		%			( )	거는 전화결제	
	폰빌		%			( )	받는 전화결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국민	원	수협	원	우체국	원	( )
		기업	원	신한	원	제일	원	
농협		원	외환	원	하나	원		
부산		원	우리	원	경남	원		
광주		원	통합	원		원		
문화상품권		%			( )	컬처랜드 (www.cultureland.co.kr) 회원으로 우선 가입 후 이용 가능		
게임문화상품권		%			( )	선불카드		
탄개시		%			( )	선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			( )	북앤라이프 (www.booknlife.com) 회원으로 우선 가입 후 이용 가능		
해피머니상품권		%			( )	선불카드		

- 모든 수수료는 계약시 결정되어야 하며, 1 거래 건당의 율로 산정한다
- 제반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로 산정한다
-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는 거래취소시 INIPay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고객에 대한 환불은 “갑”이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금액	비 고
초기등록비	220,000원	1. 기 입금된 초기 등록비 및 연관리비는 이용계정이 부여된 이후는 환불되지 않는다. 2. 초기등록비 및 연관리비는 VAT를 포함한다.
연관리비	220,000원	3. 연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비 초년도 면제시 다음해부터는 정산대금에서 자동 차감할 수 있다. 4. 초기등록비 및 연관리비 납부 경로 www.inicis.com > 중앙 PG서비스->이용요금결제 .

- ① “갑”은 매년 연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비를 재계약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직권으로 차감할 수 있다
- ② 지불수단 수수료와 결제주기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면 또는 기타(우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1. 결제기관(신용카드사 등)과 “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결제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의 월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금액 및 건수, 민원발생의 빈도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 칙 2 -

[ 서비스 신청서 ]

- ※ 기본 설정 서비스 요청내용은 ( )로 표시 합니다.
- ※ 요청 서비스 항목은 (  or  )로 표시 해 주십시오.
- ※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것은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검 수	
검수자	
처리일	

1. 상점 기본 정보

회사명			홈페이지주소	http://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태		종목		대표전화	팩스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주요 ITEM (판매품목)			시스템 개발 업체 (있을 경우 만 기재)		
			호스팅 사용시 업체명		
계약담당자		전화 / 휴대폰	/	E-mail	
기술담당자		전화 / 휴대폰	/	E-mail	
운영담당자		전화 / 휴대폰	/	E-mail	
정산담당자		전화 / 휴대폰	/	E-mail	
기타담당자		전화 / 휴대폰	/	E-mail	

2. 서비스 요청 내용

1	카드매출전표	발행 ( ) 미발행 ( ) 거래확인서 ( )	5	무이자할부	적용 ( ) 미적용 ( )
2	부가세	표기 ( ) 미표기 ( ) 업체정함 ( )	6	고객 e-mail 수정	수정허용( ) 미허용 ( )
3	현금영수증	발행 ( ) 미발행 ( )	7	OK 캐쉬백	사용 ( ) 미사용 ( ) 계약사 ( ) 가맹점번호 ( ) 적립율 ( ) 적립수수료율( )
4	카드매입방식	자동 ( ) 수기 ( ):직접매입요청	8	M 마일리지	사용 ( ) 미사용 ( ) 수수료 (컨텐츠 % 현물 %) 1.제공정산주기:월 4 회,월 2 회,월 1 회 중 택일 2.영업대행 업체명(ID): _____ 3.IMI 아이디(ID): _____

3. 대금 입금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통장인감

20    년    월    일

상호 :  
대표 :

(인) (인감도장으로 날인)

## 주식회사 이니스스 귀중 서비스 신청서 작성 안내 **-(참고용)**

**1. 구비서류 안내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택배/퀵으로 발송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1. 이니페이 계약서 2부(부칙포함) 2. 서비스 신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입금계좌 사본 1부 (법인명의) 5.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b>양도/양수 사업자 각 1부</b> 6.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명의) 7. 사용인감계 1부(계약서 사용인감으로 작성시)	1. 이니페이 계약서 2부(부칙포함) 2. 서비스 신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입금계좌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5.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b>양도/양수 사업자 각 1부</b> 6.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원본 1부 or 대표자 신분증(앞/뒤) 사본 1부
보내실 곳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4 하이엔드 타워 2차 12층 쥬이니스스 신규영업팀 (TEL : 02-3430-5858)	

**2. 등록비 입금**

[www.inicis.com](http://www.inicis.com) >서비스신청>이용안내>등록비/연관리비 결제 클릭.(신용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가상계좌)가능)

**3. 보증보험신청**

[www.inicis.com](http://www.inicis.com) >서비스신청>이용안내>보증보험 클릭.(보증보험 신청 바로가기 클릭)

**4. 서비스 요청 내용 부가 설명**

1) 카드매출전표

- \* 발행함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 합니다.
- \* 거래확인서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거래확인서 발행시 구매자 요청시 세금계산서 별도발행이 필요합니다.
- \* 발행내역 확인 경로 : <https://iniweb.inicis.com/> 가맹점관리자시스템->거래내역->거래조회->"내역조회"
- \* 카드매출전표 재발행 경로 : <https://iniweb.inicis.com/> 가맹점관리자시스템->거래내역->통합조회->"매출전표재발행"

2) 부가세

- \* 표기 : 카드 결제액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표기 합니다.
- \* 업체정함 : 가맹점(쇼핑몰) 사이트에서 면세와 과세 상품을 고객이 (쇼핑몰)장바구니를 통해 한번의 결제로 구매하거나, 택배비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경우 **면세품 및 택배비**에 대하여 해당 내역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VAT 표기시 구분되어 표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옵션기 가능하며,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 본 옵션(업체정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VAT 표기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정산, 승인, 매입 등 기존 서비스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 현금으로 결제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금액 제한 없이 발행하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4) 카드매입방식 \* 자동 : 승인 및 취소 거래에 대해 이니스스가 카드사로 해당 데이터를 익영업일 자동 전송합니다.

\* 수기 : 승인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90 일 이내만 가능)

취소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365 일 이내만 가능)

5) 카드무이자 할부

- \* 결제고객에게 제공하는 가맹점(쇼핑몰) 자체 무이자 서비스로 5만원 이상 결제시만 적용 가능합니다.
- \* 무이자할부 이용수수료는 가맹점(쇼핑몰)부담이며 정산대금에서 차감 후 정산됩니다.
- \* 무이자 할부 수수료율(부가세 별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수수료율	2.1	3.2	4.0	4.7	6.0	6.6	7.4	8.2	9.1	9.9	11.2

- \* 무이자 할부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 무이자 거래 이용 설정은 가맹점에서 직접 설정 해 주셔야 합니다.

무이자 설정 방법 - 카드사코드-할부개월:할부개월,카드사코드-할부개월:할부개월,...

☞ <input type=hidden name=nointerest value="yes">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개월:6개월(11-03)">  
: 비씨카드 3개월 무이자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개월:4개월:6개월(01-03:06,11-03:04)">  
: 외환카드 3개월,6개월 무이자 & 비씨카드 3개월,4개월 무이자

\* 전 카드사 이용 가능하나 단, 계열카드사(한미/수협/조흥/씨티/광주/제주/전북/해외카드등)는 제외 됩니다.

\* 단, 이니시스 이벤트 무이자 적용의 경우는 이벤트 무이자 적용을 우선 합니다.

#### 6) 고객 e-mail.수정

\* 결제창에서 고객이 e-mail 주소를 수정가능 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결제안내 메일은 결제창에서 입력한 고객 이메일로 발송 됩니다.

#### 7) OK Cashbag

\* SK 마케팅앰컴퍼니㈜ 또는 청람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 체결하여 가맹점번호를 확정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계약사는 최종 계약한 회사, 즉 SK 또는 청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적립율과 적립수수료율은 계약시 정해진 수수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8) M 마일리지

\* M 마일리지는 (주)아이엠아이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INIPa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입니다.

\* M 마일리지 서비스는 (주)아이엠아이의 ID/PW 이외의 고객이 (주)아이엠아이에 등록된 2차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 모든 회원의 인증 및 승인은 (주)아이엠아이에서 실시합니다.

\* 회원등록 및 마일리지 충전은 <http://www.itemmania.co.kr/>에서 가능합니다.